「도봉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구 미 시 장

2. 제안이유

가. 도봉국민체육센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체육시설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사무를 위탁하기 위해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 무 명: 도봉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

나. 추진근거 및 필요성

1) 「지방자치법」 제117조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

3)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4)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2조 및 제22조의 2

5)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9조

6)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 제4조 및 제6조

다. 위탁 사무 내용: 도봉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전반

라. 위탁시설

1) 시 설 명: 도봉국민체육센터

2) 소 재 지: 구미시 송동로 139(도량동 92)

3) 규　　모: 부지면적 1,025㎡, 연면적 1,393㎡(지하 1층, 지상 3층)

4) 주요시설: 스쿼시장 4면, 체력단련실 등

구 분		주 요 시 설	비 고
지상	1층	통신실, 사무실 등	
	2층	스쿼시장(4면) * 복식 1면, 단식 3면	
	3층	체력단련실, 샤워실 등	
지하		기계실 등	

마. 위탁기간: 2027. 1. 1. ~ 2031. 12. 31.(5년)

바.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96,563천원(2027년)

사. 수탁자 선정방식: 성과평가 및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재계약

아. 적정성 검토결과: 적정　※ 공공위탁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2026. 8. 19.)

자. 위탁구분: 재계약 (수탁기관: 구미도시공사)

4. 부서의견

가. 도봉국민체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 시설 관리·운영에 전문성을 갖추고 공공성과 편익증진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할 수 있는 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나. 구미도시공사는 3년간 도봉국민체육센터를 관리·운영해 온 경험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증가하는 생활체육시설 이용 수요를 충족시키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117조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

3)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4)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2조 및 제22조의 2

5)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제4조

6)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 제4조 및 제6조

나. 예산조치: 2027년도 예산편성

다. 성과평가 결과 및 감사결과

6.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 도봉국민체육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현 수탁기관인 구미도시공사와 재계약 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 검토 결과,

- 리모델링 이후 체력단련실 운영 등으로 시설 이용이 확대되고 있으며, 현 수탁기관인 구미도시공사의 운영경험과 성과평가 및 공공위탁 선정 심의위원회의 적격 판정 등을 고려할 때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위한 재계약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스쿼시장과 체력단련실의 이용 수요를 반영하여 강습 및 이용 환경을 개선하고, 운동시설과 장비의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시설 활용도 제고와 시민 만족도 향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